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(안 제16조의 6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6제1항 중 “9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3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6(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(이하 “공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6조의6(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1명</u> -----.
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,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<u>3명</u>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명</u>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88